◉재정경제부공고 제2026-140호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4월 24일

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(’ 26.4.15.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)됨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, 납입증명서 등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・단체의 경우 기관・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
 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
- 전자우편 : potear02@korea.kr
- 팩스 : 044-215-8073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(전화 044-215 - 4232, 팩스 044-215-80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